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600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6.01.0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1.06.

수라닭개장 정보공개서

[수라 닭개장]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수라 닭개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7, 101-3, 101-4호(원시동, 서흥테크노밸리)		
대표전화번호	031-493-4447~8	대표팩스번호	031-495-0940
홈페이지	-	이메일	sura0919@naver.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수라 닭개장	수라닭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7, 101-3, 101-4호(원시동, 서흥테크노밸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8.06.01.	강순미	031-493-4447~8	031-495-0940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54-01-0116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수라닭개장	-
상 호	수라닭개장 OO점	-
상 표	-	-
그 밖의 영업표지	 수라닭개장 <small>SULA-DONGGEJANG</small>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740,281	859,362	-119,080	733,595	74,468	56,571
2023년	726,530	762,994	-36,463	784,041	62,285	65,290
2024년	719,859	733,937	-14,078	808,690	89,479	70,223
그 근거자료는 【별첨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순미	대표이사	2018.06. ~ 현재	수라 닭개장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건본 이미지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해당없음	-	-	-	-
권리내용	영업표지 또는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품·용역에 사용				

Ⅱ. 가맹본부의 [수라닭개장] 가맹사업 현황

1. [수라닭개장]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8년 6월 1일)

2. [수라닭개장]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수라 닭개장	수라닭개장	강순미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7, 101-3, 101-4호(원시동, 서흥테크노밸리)

3. [수라닭개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수라닭개장	한식	닭개장, 닭곰탕, 닭볶음탕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수라닭개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수라닭개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가맹점 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초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가맹점수 , 연말 :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수
- 신규 개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점 및 운영 중인 본부의 직영점을 양수한 가맹점 수
- 계약 종료 : 해당 연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
- 계약 해지 : 해당 연도에 계약기간 중 폐점 및 본부에게 직영점으로 양도한 가맹점 수
- 명의 변경 : 해당 연도에 기존 운영점포에 대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 신규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간 합의를 통하여 신규 가맹점사업자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수

6. [수라닭개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수라닭개장] 외에 바로 전 3년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없음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수라닭개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연간 평균매출액은 가맹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고, 가맹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수라닭개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수라닭개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개)	평균 영업기간(일)
2024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수라닭개장] 브랜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9,985	 (비공개)	-	
광고	-	 (비공개)	29,985	 (비공개)	-	
판촉	-	 (비공개)	0	 (비공개)	-	

※ 당사의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는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실무상 제한으로 인하여, 광고비와 판촉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데에 현실적인 곤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기재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예치가맹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예치가맹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수라닭개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 및 영업비밀 제공 대가
교육비	3,300		교육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교육 및 영업비밀 교육 대가
합계	8,800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계약 체결 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

※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우리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무이자)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을 귀하에게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합계	10,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V. 1. 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조	33,000	1,65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맞춤 제작 자재 대금 일부 제외)	권장 20평(66㎡) 기준, 점포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간판·사인 물 등	【V. 1. 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조	6,600	해당없음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맞춤 제작 자재 대금 일부 제외)	점포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설비 및 집기	【별첨2】 참조	40,700	해당없음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점포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초도물품	【별첨3】 참조	7,700	해당없음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점포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합계	-	88,000	-	-	-	오프라인 점포 기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가맹점사업자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철거, 전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화장실, 정화조, 도시가스, 파사드, 소모품 등 견적 외 품목은 건물의 구조·상가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테리어·간판 설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공·설치 행위는 당사가 정한 사양 및 기준에 따라 귀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통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현, 고객 안전 및 동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전 과정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 시안 또는 도면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귀하가 직접 수행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 3.3㎡당 금이십이만원(₩220,000/부가가치세 포함)은 귀하가 부담(공사 3일 전까지 당사에 납부)하며, 이로

인하여 도매가격 이상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 ※ 당사가 귀하의 최초 점포 인테리어 설비에 관하여 직접 투자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고, 아직 귀하로부터 그 비용을 모두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테리어 설비의 소유권이 당사에게 유보되므로, 귀하는 해당 설비에 관하여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프리미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때에는, 귀하는 그 이익액 중 당사의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사의 투자 비율은 전체 인테리어 비용 중 당사가 부담한 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 ※ 귀하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선지급하여 물품을 구입·공급·의뢰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행 부담한 경우, 가맹계약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때에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선지급한 금액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비용(관리비, 운송비, 보관비, 금융비용, 세금 기타 일체의 비용 포함)을 본사에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희망자는 점포의 선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점포를 선정함에 있어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의 특성, 통행인의 구매 성향, 인접 주요 시설물, 업종별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가맹희망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점포선정 과정에 있어 어떠한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확약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채용 기준과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 - 인허가 적격요건을 갖춘 자 - 외국인의 경우 사업 가능 체류자격을 득한 자
종업원	특별한 사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일 것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 - 인허가 적격요건을 갖춘 자 -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 체류자격을 득한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수라닭개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 열 티	가맹본부	매월 총매출액 ¹⁾ 의 1.1%	매 익월 5일까지	소멸성	무형의 자산	-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고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 실시 후	수시교육, 재교육, 특별교육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협의를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실시 후	【Ⅴ.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협의를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실시 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별도협의를	별도로 지정한 기한	후불로 반환 안 됨	-	-
POS 사용료	【Ⅴ. 1. 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조	대당 월 24.2	별도협의를	-	-	통일성을 위해 권장
테이블오더사 사용료	【Ⅴ. 1. 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조	대당 월 37.4	별도협의를	-	-	통일성을 위해 권장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시행업체	견적내용에 따라 다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시행업체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개별 청구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시행업체	견적내용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 연 이 자	가맹본부	연 12%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통일적 관리 및 프로그램 호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타사의 기기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당사의 정책 및 당사가 제공하는 매뉴얼 및 규정, 세부 운영규칙, 지침, 안내서, 품질조건 등(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총매출액”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한 상품 판매대금(온·오프라인 포함)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지불한 최초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본 총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및 기타 유사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는 총매출액의 계산 효율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직전 사업연도 :	2024년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	-	-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귀하가 점포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승계의 경우 '없음'	0 본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3,300	0 단,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신규 가맹 계약의 체결 을 희망할 경우,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없음)	2,000	0 또한, 귀하는 영업 양도·양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수인에게 당사의 운영 제도, 규약 및 금전적 지급 의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사항	관련 계약조문
○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제·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갑”의 가맹사업 시스템 및 운영방법, 노하우 등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비밀, 영업표지·지식재산권, 상호, 표장, 로고 등 일체의 영업표지의 사용(인테리어, 간판, 온라인 플랫폼, 블로그, 포털사이트 및 SNS 등 포함)을 즉시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거 내지 제거,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p>○ 제1항의 철거·제거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p>	제36조 제2항
<p>○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을”은 공급된 상품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반환상품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제36조 제3항
<p>○ “을”은 “갑”이 제공한 모든 메뉴얼 및 지침, 운영규정 등 점포운영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계약이 해지·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36조 제4항
<p>○ “을”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갑”의 영업표지, 영업노하우, 메뉴얼 및 기타 가맹점 운영규정 등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무단 영업비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p>	제36조 제5항
<p>○ 본 계약 종료 이후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영업표지·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간판, SNS 홍보, 기타 표시물 등에 “갑”의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p>	제36조 제6항
<p>○ “을”은 계약 종료 후에도 “갑”의 영업비밀, 운영규정 및 영업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갑” 및 그 임직원, 그리고 “갑”의 가맹사업에 대한 신용, 영업적 명성,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제36조 제7항
<p>○ “을”은 본 계약의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 포함) 시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 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p>	제36조 제8항
<p>○ 본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p>	제36조 제9항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수라닭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수라닭개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수라닭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직전 사업연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 2) 당사가 [수라닭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p align="center">【별첨4】 참조</p>	<p>영업표지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왼쪽에 상품 이외의 상품 ·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p>	<p align="center">2회 이상의 서면상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p>	<p align="center">-</p>

※ 귀하는 당사가 추천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 문서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당사의 품질관리기준, 동종 산업 내 타사의 동향, 관련 법규 등을 감안해서 그 가부를 회신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 거래상대방 및 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유통채널(온라인판매채널 등 포함) · 판매방식을 통하여서만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가맹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도 유통채널 · 판매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된 유통채널 · 판매방식을 포함한 당사가 지정한 유통채널 · 판매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하는 당사가 지정하지 아니한 유통채널 · 판매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2 및 3】 참조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2회 이상의 서면상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4】 참조	【별첨4】 참조	변동 시 통지	-

※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권장합니다. 가맹본부가 권장하는 판매가격은 시장경쟁력, 가맹점 이익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가맹점사업자 판매촉진 등의 사유로 가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대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판매가격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산출, 재고조사,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개장, 닭곰탕, 닭볶음탕 등을 판매하는 업종	수라닭개장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 특수상권 ²⁾ 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 영업지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휴게소,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 특정 공간 내에서 주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독립상권은 “**특수상권**”으로서, 점포 소재지의 행정구역 및 일반상권의 거리 설정과 무관하게 기존 영업지역과 구별되는 독립적 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의 거리는 각 가맹점의 주출입구를 기준점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때 측정된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휴게소,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과 같이 특정 공간 내에서 주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권은 행정구역 및 일반상권의 거리 설정과 무관하게 기존 영업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적 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업종이 아닌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사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본 계약상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에 따른 지역적 배타성의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온라인상 영업지역에 대하여는 배타적 영업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하는 네이버플레이스·검색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타 가맹점의 상호를 키워드로 설정하거나, 해당 검색어 입력 시 자신의 가맹점이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함으로써 타 가맹점의 영업상 신용 또는 거래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점포 소재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0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0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책임을 다하되, 그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같은 영업표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수라담개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수라담개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수라닭개장] 가맹사업의 최초 가맹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또는 상호 약정한 날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2항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해지)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 이 2회 이상 로열티 등의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과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과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본 계약과 동일한 영업포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 하게 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갑” 의 영업표지를 소모품과 비품 등의 제작·인쇄를 위해 사용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영업표지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의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营业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기타 “을”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해 설비 설치, 영업과 관련한 신고·등록·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취득, 기타 영업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2항(“갑”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 지급의무) 및 상호 합의한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 은 사전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 과 “을”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 제4항
○ “을” 이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을” 이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나. (즉시해지)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 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35조 제2항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의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 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목(필수품목 포함) 등의 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 따라 변경되며, 그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41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 문의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 위탁경영(대리행사·업무위탁 포함)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대리행사·업무위탁 포함)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경영인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귀하는 위탁경영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최초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속

귀하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귀하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운영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이 가맹점운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가맹점운영권을 승계한 귀하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개별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상속인간 또는 상속인과 당사 간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 중 1인과만 본 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상속인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상속인 전원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을 승계한 귀하의 상속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하되, 귀하의 사망 당시까지 귀하의 당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나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계약이행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가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당사에게 부족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당사가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본 계약상의 (최초)교육비를 당사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속인이 종래부터 해당 가맹점에 근무해 왔던 등으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상속에 관한 승계 거부 또는 본 계약 해지는 당사와 귀하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승계 거부 또는 계약 해지로 보고, 귀하의 상속인 전원의 승계 거부 또는 귀하의 상속인 전원에게 대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운영권은 소멸되고, 귀하와 당사는 제3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거부 또는 승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교육 및 (최초)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부족분) 지급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 수료 및 (최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부족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10영업일 이내) → 교육 및 교육비 지급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10영업일 이내) → 교육 및 교육비 지급 →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국내에서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특수관계인 기타 이에 준하는 자 포함)의 계산으로 당사의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종의 영업이란 아래 “경업금지 되는 업종” 중 1개 종류 이상을 주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종의 영업을 말합니다. 독립 사업 운영,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 독립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귀하는 본 계약의 종료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같은 시·군·구 내에서(귀하의 영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당해 시·군·구 외의 영업지역도 포함함)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특수관계인 기타 이에 준하는 자 포함)의 계산으로 당사의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종업종 경업금지 행위에는 제3자의 명의로 변경 후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종사하거나 귀하가 제3자를 지원·조력하여 당사의 가맹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닭개장, 닭곰탕, 닭볶음탕 등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가맹본부 문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수라닭개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6:00 ~ 20:30	주 6일 이상	가맹본부 문의

- ※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본 계약에서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되, 가맹점 소재지의 상권 특성, 지역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는 귀하와 협의 후 별도의 영업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그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휴업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필수 아님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당사는 귀하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운영 매뉴얼 및 영업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지침 준수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일반방문 → 주문 → 서비스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수라닭개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주들의 행사 동의 → 행사 시작(단, 광고 성격상 부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 가능함)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측행사	통상적인 전체행사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 행사 시작	- 월별관측행사 - 전체 가맹점사 업자의 70%이 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기타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당사 브랜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40조 【손해배상】

-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 이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 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 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36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 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의 지체배상금을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 이 제37조를 위반하여 “갑” 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제공하거나 부정경쟁 행위 또는 경업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 이 제38조를 위반하여 “갑” 이 지정한 필수품목 등을 자점매입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하여 자점매입이 적발되어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을” 이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 재발행위 1회당 본문 전단과 동일한 위약벌이 별도로 부과된다.
- ⑦ “을” 이 제29조를 위반하여 “갑” 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 등을 위반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 이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전 “을” 의 귀책 또는 요청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금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을” 이 영업 개시 이후 “을” 의 귀책 또는 요청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서 **1일당 금오만원(₩50,000) × 잔여계약기간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⑩ “을” 이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을 한 경우 **금삼천만원(₩30,000,000)**을 위약벌로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⑪ “을” 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 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⑫ “을” 이 판매 매출액의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불완전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되는 **로열티 금액의 10배**를 “갑” 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지원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1 & 12] 예치 방식 참조	D-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3(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가맹본부 문의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가맹본부 문의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수라동개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효율적인 [수라닭개장]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선택)	기한	비고
최초교육	회사 소개, 영업 및 운영규정 등, 프로그램 및 장비 사용, 입금 방법, 영업비밀 관리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점포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개점 승인 조건
수시교육	가맹사업 중요사항 교육 및 운영규정 변경 교육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시 안내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현장지도 요청 내용	개별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선택 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계약위반 재발방지 교육) 등	개별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수라닭개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5일	3,300	필수 교육, 개점 승인 조건
수시교육	최소 1일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최소 1일	교육비 및 출장비 별도 협의	선택 교육, 요청 시 실시
재교육	최소 1일	교육비 등 별도 협의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 교육기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최초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지 아니하여 가맹점 운영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점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교육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합니다.

※ 최초교육은 본 계약에 따른 귀하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 인원의 교육을 귀하가 희망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교육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 인원의 교육을 귀하가 신청하는 경우, 당사는 교육 대상자의 적격성, 수용 가능 인원,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청을 승인합니다.

※ 개점 이후 교육·훈련시 숙박비, 교통비, 장소대여비, 교재비 등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에 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실비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실비를 가맹본부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실비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단, 가맹본부는 교육의 수용 가능 인원,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원에 대한 교육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 또는 영업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교육 또는 가맹계약의 위반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는 재교육, 특별교육에 대하여,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참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수라담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7, 101-3, 101-4호(원시동, 서흥테크노밸리)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전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08,690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기준


※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의 실제 영업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산정 자료에 포함하며,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직전 3개 사업연도)
------------	-------------------------

□ 2024년 ~ 2022년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2	설비 및 집기리스트
------------	------------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3







원부재료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4

판매상품리스트

	닭개장 대표 10,000원
	닭곰탕 대표 10,000원
	(세트)닭무침+납작만두 10장 대표 신메뉴 출시 기념 3,000원 할인(~11/30) >15,000원 / (정가)18,000원 15,000원
	닭도리탕 (소) 대표 35,000원
	닭도리탕 (대) 대표 45,000원
	납작만두 5장 2,000원

※ 경영 전략과 시장 환경에 따라 품목 및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명시된 품목은 시장 상황의 변동 또는 당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추가, 변경, 조정,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가맹계약에 포함됩니다. 본 품목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이후 변경된 내용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경영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그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가맹점 순회 점검표(가맹본부의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